

이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제정 1996· 3· 1 규칙 제 24호
 전문개정 1997· 4· 29 규칙 제 98호
 개정 1998· 10· 19 규칙 제136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01· 12· 6 규칙 제23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11· 30 규칙 제612호
 (이천시 규칙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소속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자세) 공무원이 직무에 임할 때에는 청렴한 마음과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고, 주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실·과·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0· 19, 2001· 12· 6>

③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30>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4·29 규칙 제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19 규칙 제136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1·12·6 규칙 제23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7·11·30 규칙 제612호, 이천시 규칙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출 장 신 청 서

결 재				협 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서명 또는 날인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이동상황 :							
여비			정산				